

『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0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1월 4일

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구 건 회

나. 제안이유

-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자살위험에 처한 주민의 권리 및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(안 제1조~제5조)
- 자살예방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(안 제6조)
- 자살예방센터의 설치(안 제7조)
- 자살예방·생명존중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)
-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(안 제9조~제10조)
-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비밀보장 의무(안 제11조~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정신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먼저, 안 제1조 ~ 제5조는 자살위험에 처한 주민의 권리 및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의 규정을, 안 제6조는 자살예방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을, 안 제7조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를, 안 제8조는 자살예방·생명존중위원회 설치·운영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9조 ~ 제12조는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, 지원체계 구축과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비밀보장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
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근거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